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4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우재준 · 박충권
김용태 · 김미애 · 김선교
김형동 · 이인선 · 이종배
김성원 · 김소희 · 김정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 · 눈 · 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(失火)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,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은 산불 · 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,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,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

임(안 제19조의4 신설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4(기상조절 실험·연구 추진 등) ① 기상청장은 산불·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,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조절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실시와 관련한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결과와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추진, 기상조절영향평가의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 사전고지 및 제4항에 따른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<u>제19조의4(기상조절 실험·연구 추진 등) ① 기상청장은 산불 · 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②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, 보건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 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조절영 향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실시와 관련한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명시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기상청장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결과와 기술적 성과 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⑤ 그 밖에 기상조절 실험 및</u>

연구의 추진, 기상조절영향평가
의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역주
민 사전고지 및 제4항에 따른
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